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아동학대예방지침서

chapter 01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3

- 1. 아동의 권리 4
-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피해징후 5
- 3. 아동학대의 원인 8
- 4. 아동학대 사례 9
- 5. 아동학대의 현황 10

chapter 02 아동학대 대처하기 12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13
- 2.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방법 14
- 3. 신고의무자의 역할 17

부록 긍정적인 훈육방법 20

chapter

01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 1. 아동의 권리 | 4
-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피해징후 | 5
- 3. 아동학대의 원인 | 8
- 4. 아동학대 사례 | 9
- 5. 아동학대의 현황 | 10

1 아동의 권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린시절에 어떻게 보호받고 자랐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더불어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무시당하는 아동들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숙하기 힘들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었고, 이에 비준한 나라들은 아동의 미래를 보호하고 지킬 것을 약속했다.

아동의 권리 4가지 유형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 아동보호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며,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아동학대이다.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피해 징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몸 신체 학대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트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구타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거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행위
-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아동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성학대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함
-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짐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짐
-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함
- 아동 매춘이나 아동 매매를 함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병감염, 임신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홍진 • 항문주면의 멍이나 찰과상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입천장의 손상, 인두 임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강박적인 자위행위, 타인과 성적인 상호관계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기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비행, 가출 • 수면장애, 배설장애, 섭식장애

🎁 방임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함
- **교육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함,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음
- **의료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함, 태아기에 약물 및 알코올에 노출시킴
- **기 타**: 출생 후 호적에 올리지 않음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칙적 식사 또는 잦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유 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3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각 사례마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변화를 위해 아동학대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요인

- 미숙아, 기형아
- 고집스러운 성격
-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동
- 지나친 자신감 결여

부모요인

-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 잦은 가정위기
-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
- 알코올 및 약물중독
- 불안정한 성격

사회적 요인

- 가족구조적 요인 (빈곤, 실직, 사회적 고립 등)
-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한 사회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 차별이 수용되는 사회



4 아동학대 사례

사례1

엄마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물리적·교육적 방임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은주(가명)는 결석과 지각이 잦고 숙제나 준비물을 거의 챙겨오지 못했다. 또한 불결한 모습과 산만한 행동으로 반 친구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상담원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는 은주의 집은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 점포 1층 단칸방이었는데,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다. 집안에서 썩크대나 화장실이 없어서 전혀 물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발을 던기 힘들 정도였고 악취가 심하게 나고 파리와 날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담임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로 엄마와 면담을 했을 때는 은주가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누군가가 집 지하에서 자신과 아동을 감시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상담원이 은주 엄마와 면담했을 때는 망상, 환청, 환시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의심되었으며, 자신이 아파서 아동을 잘 돌보지는 못하지만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하였다. 은주 엄마의 정신질환으로 은주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은주 엄마는 정신 질환에 대한 병식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망상을 은주에게 주입하고 있었다.

상담원의 개입으로 은주 엄마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은주는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한 후 장기시설로 전원 되어서 잘 생활하고 있다.

사례2 **엄마의 동거남에 의한 성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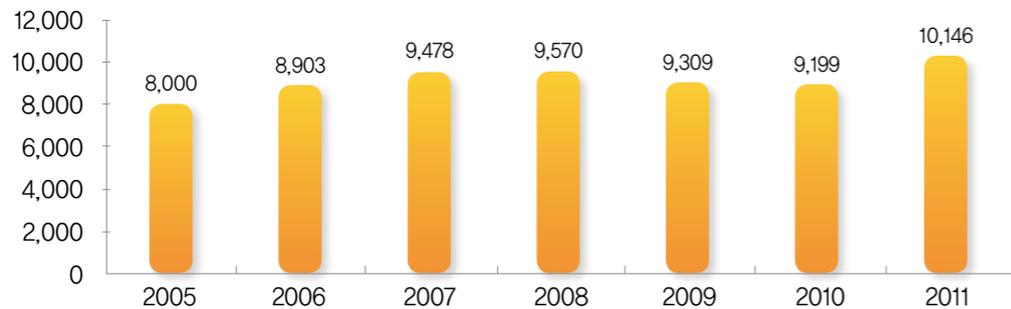
9살인 진영이는 엄마와 삼촌이라고 부르는 엄마의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와 삼촌은 주로 야간에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생활을 하며, 진영이는 학교 갈 나이임에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이 낮시간에 동네를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상담원이 방문하게 되었다. 진영이 엄마는 빛을 갓고 생활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아동을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시설보호를 요청하여, 일시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진영이를 초기상담 및 심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촌에 의한 성추행 징후가 발견되었다. 진영이는 삼촌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경찰에 엄마의 동거남을 수사의뢰하여 처벌받게 하였다.

그 후 진영이는 장기시설로 전원하여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엄마 또한 진영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면회하고 있다.

5 아동학대 현황 (2005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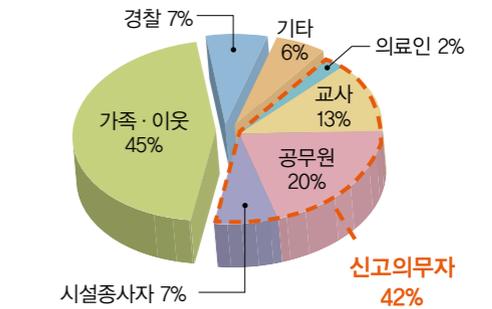
1) 신고접수현황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아동보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1577-1391 신고전화의 홍보, 언론매체의 보도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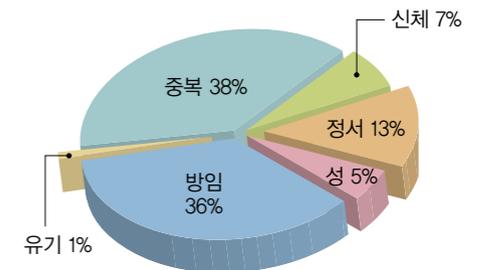
2) 신고자 유형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복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율은 42%이나 아동관련 종사자의 보호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무직업군이 증가 추세이다.



3)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빈곤문제와 관련이 깊고 자녀양육 기술이 부족한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방임형 학대유형이 가장 많다.



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했다.



chapter

02

아동학대 대처하기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 13
2.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방법 | 14
3. 신고의무자의 역할 | 17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고(아동복지법 제45조, 이 조항을 근거로 2012년 현재에는 전국에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총 4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 치료 및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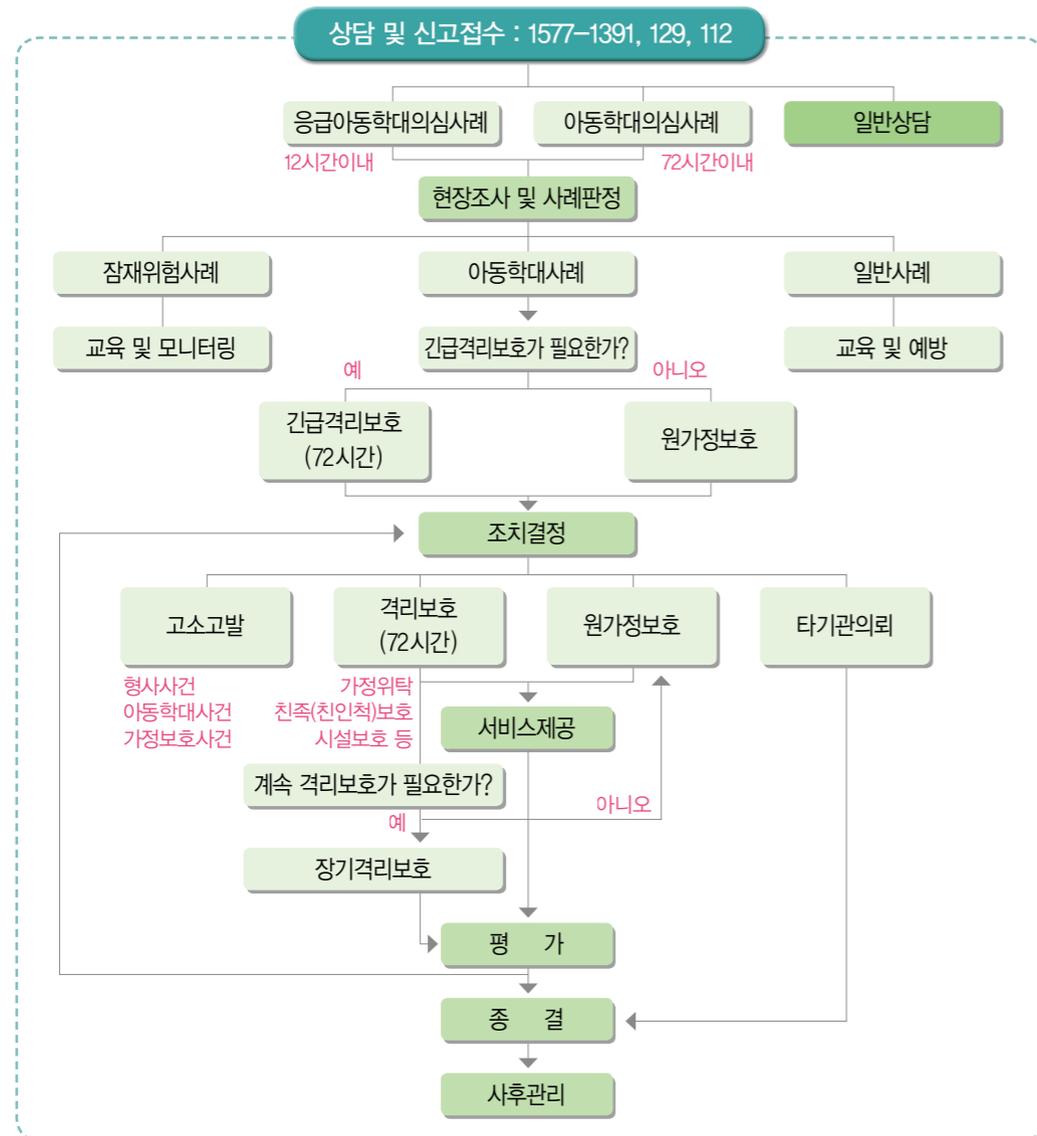
- 1577-1391 아동상담전용전화 운영
-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료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상담전화 1577-1391번,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경찰서나 타기관으로부터 의뢰, 방문 및 서신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접수 받는다. 이후 현장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를 판정하고 각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③ 신고의무자의 역할

📞 신고의무자 규정

아동복지법 제2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아동의 특성상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교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는 신고인은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밀보장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5조 제3항)

‘성추행’ 알고도 신고 안 한 교사에 과태료 부과

원주 A초교에서 근무했던 B(60)씨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남녀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원주시는 B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A초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3명에게 각각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의무자의 역할

• 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아동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아동의 가정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학대 가능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부모가 자신의 아동을 비난하거나 낮추어 보는 경우
- 다른 형제나 자매에 비해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
- 아동을 “나쁜 아동, 악마, 사탄”으로 표현하는 경우
- 아동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
- 아동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한 면담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부모가 술을 자주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 부모가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료인의 역할

심각한 학대 징후가 나타난 경우 병·의원 등을 통해서 응급치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인은 학대피해아동을 만나게 되고 학대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한다
- 학대받은 아동이 더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한다
- 정확하고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기록을 남긴다
 - 과거 의료상태와 사회적 과거력을 포함한 아동의 건강진단의 기준, 상처의 형태·수·크기, 치료정도, 원인, 신체그림에 기록된 설명, 관찰된 행동, 양육자가 상처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적절한 임상적 결과와 결과지, 사진과 방사선 검사 등

• 시설종사자의 역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대리양육자인 동시에 신고의무자이다. 시설에서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동시에 양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에 의한 아동 체벌 및 성추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과 체계를 만들고, 아동 간 성추행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아동관련 시설종사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아동복지사업안내서를 숙지하고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시설 내에서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간의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되며,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입소중인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아동의 인도 요구 시, 반드시 입소의뢰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를 취한다



긍정적인 훈육방법

전문적인 교육자, 부모들은 아동들과 지내야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훈육에 대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훈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시대가 변하면서 더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훈육을 하는 이유를 늘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과연 아이를 진정으로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지, 미숙한 존재여서 어른이 이끌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보는지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훈육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훈육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훈육을 받는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진정으로 아이가 훈육의 이유를 알고 있는지, 다음에는 어떠한 다른 행동양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늘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훈육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다

어떠한 때는 되는 일이 어떠한 때는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감의 형성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흔히 아이들은 부모들이 통화를 하고 있을 때나 타인과 있을 때 무엇인가 조르는 습성이 있다. 아마 그것은 부모들이 그러한 때에 그것을 쉽게 용인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은 늘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음을 아이도 인지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살다보면 예외라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그 예외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또한 융통성을 기르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단 조르거나 잘못에 대해 그냥 무마하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는 점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연습은 어려서부터 연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훈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서 왜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도록 한다.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이와 교육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변명하는 것으로 여겨 아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주장을 할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옳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옳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번거롭다는 이유와 함께 아이들은 늘 핑계를 댄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에 아이의 생각을 들으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자도 사람이기에 신체적으로 피곤하다든지 몸이 아프다거나 좋지 않은 기분일 때가 있다. 그럴 때 인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자신의 자녀에게는 좀 더 쉽게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나 기분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교육자인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더욱 더 예민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에 항상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겸손함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본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알고 있지만 쉽게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을 모두들 어려워하는 것 같다. 특히 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혹 우린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비교해 볼까요?” 라고 도전적으로 응대하기에 서로 말다툼만을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 꾸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나 언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는 확실히 훈육하는 것이다

아이를 꾸중하고 있는데 아이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반응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잘못하였으며 어떻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이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되며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범위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집안마다 지켜야 하는 규칙이 다르듯이 어느 집단에서나 모두 지켜야 하는 규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다짐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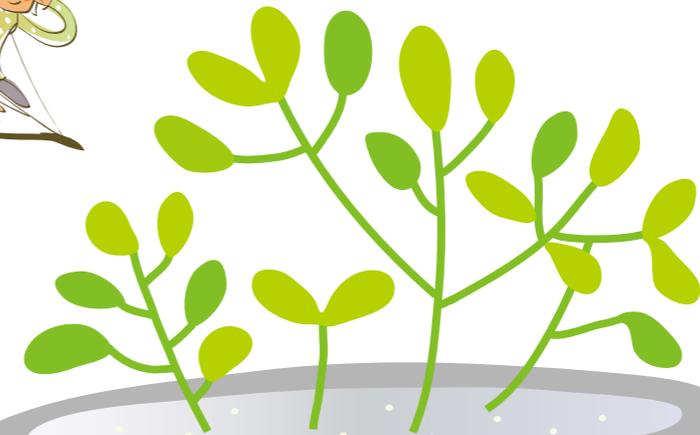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발달 능력에 맞게 한가지씩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과다한 분량의 약속을 받아내기 보다는 성공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자칫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주 꾸짖기 보다는 틈틈이 규율을 상기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때”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빠른 해결을 위해 어른들이 쉽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되어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 집중하므로 서로 이성적인 사고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난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양식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늘 교육자의 한 사람이며 부모로서 고민인 것은, 교육이란 다른 것도 아닌 믿어주는 사랑과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의 미래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 않을까....

글_ 송선희 교육학 박사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마저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